

『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』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안년월일 : 2006. 12.

제안자 :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

1. 수정 이유

하수도요금의 과도한 인상율로 인해 시민들에게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시민들에 대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였음

2. 수정 주요내용

- 안 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금표에서 요금 적용을 수정안 별지와 같이 하향 조정하고
- 부칙 ② 적용례를 홍보기간 등의 필요성으로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토록 하였음

3. 참고 사항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
- 「하수도법」 제21조(사용료 등)
-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2조(요금)

『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』

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
수정한다.

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 ②(적용례) 중 “ 2007년 1월 ” 을 “ 2007년 2월 ” 로 한다

【별표1】

하수도 사용 요금표 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비 고
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150	
	21 ~ 30 m ³ (2단계)	200	
	31 m ³ 이상 (3단계)	450	
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280	
	101 ~ 300 m ³ (2단계)	350	
	301 ~ 1,000 m ³ (3단계)	430	
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550	
	2,001 m ³ 이상 (5단계)	650	
욕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590	
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690	
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00	
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20	
산업용	m ³ 당	270	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		개정안			수정안		
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금표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 (단위: 원)			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금표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 (단위: 원)			[별표1] 하수도 사용 요금표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 (단위: 원)		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
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120	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210	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150
	21 ~ 30 m ³ (2단계)	160		21 ~ 30 m ³ (2단계)	330		21 ~ 30 m ³ (2단계)	200
	31 m ³ 이상 (3단계)	240		31 m ³ 이상 (3단계)	450		31 m ³ 이상 (3단계)	450
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220	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350	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280
	101 ~ 300 m ³ (2단계)	270		101 ~ 300 m ³ (2단계)	470		101 ~ 300 m ³ (2단계)	350
	301 ~ 1,000 m ³ (3단계)	330		301 ~ 1,000 m ³ (3단계)	590		301 ~ 1,000 m ³ (3단계)	430
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400	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660	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550
	2,001 m ³ 이상 (5단계)	470		2,001 m ³ 이상 (5단계)	760		2,001 m ³ 이상 (5단계)	650
욕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570	욕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660	욕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590
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670	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730	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690
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780	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00	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00
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00		2,001 m ³ 이상 (4단계)	860	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20
산업용	m ³ 당	230	산업용	m ³ 당	306	산업용	m ³ 당	270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부 칙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부 칙 ① (현행과 같음) ② (적용례)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요율은 <u>2007년 1월</u>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	부 칙 ① (개정안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2007년 2월</u> ----- -----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중 “60일 이내”를 “90일 이내”로 한다.

제23조중 단서 규정을 삭제한다.

별표1 및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적용례) 이 조례 제10조제2항의 개정 요율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.

【별표1】

하수도 사용 요금표 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비 고
가정용	0 ~ 20 m ³ (1단계)	150	
	21 ~ 30 m ³ (2단계)	200	
	31 m ³ 이상 (3단계)	450	
일반용	0 ~ 100 m ³ (1단계)	280	
	101 ~ 300 m ³ (2단계)	350	
	301 ~ 1,000 m ³ (3단계)	430	
	1,001 ~ 2,000 m ³ (4단계)	550	
	2,001 m ³ 이상 (5단계)	650	
욕탕용	0 ~ 1,000 m ³ (1단계)	590	
	1,001 ~ 1,500 m ³ (2단계)	690	
	1,501 ~ 2,000 m ³ (3단계)	800	
	2,001 m ³ 이상 (4단계)	920	
산업용	m ³ 당	270	

【별표2】

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 (조례 제10조제3항 관련)

업 종 별	구 분 내 역
가 정 용	•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•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서10 m²미만의 소규모 가게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• 사설소화전
일 반 용	•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
욕 탕 용	• 목욕장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제35제8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)단, 바닥면적 1,000 m²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• 「의료법」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시설규모(연면적 830 m²,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 m²)이상의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설소
산 업 용	•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• 두채 재배업소
주) 1.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. 2. 일반용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 3.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	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20조(부과액 조정 신청) ①사용료, 점용료, 원인자 부담금, 기타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<u>60일 이내</u>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②(생략)	제20조(부과액 조정 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u>90일</u> 이내 - - ----- -----. ②(현행과 같음)	•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이의 신청 기간 조정
제23조(권리의무의 승계) 하수를 배제할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. <u>다만, 체납사용료에 대하여는 승계하지 아니 한다.</u>	제23조(권리의무의 승계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 (단서 규정 삭제)	• 규제개혁 추진 지침에 의한 문구 수정

하수도 사용 요금표 (조례 제10조제2항 관련)

(단위 : 원)

현행			개정안		
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	구분 업종별	단 계 별	요 금
가정용	0 ~ 20 m ³ (1 단계)	<u>120</u>	가정용	0 ~ 20 m ³ (1 단계)	<u>150</u>
	21 ~ 30 m ³ (2 단계)	<u>160</u>		21 ~ 30 m ³ (2 단계)	<u>200</u>
	31 m ³ 이상 (3 단계)	<u>240</u>		31 m ³ 이상 (3 단계)	<u>450</u>
일반용	0 ~ 100 m ³ (1 단계)	<u>220</u>	일반용	0 ~ 100 m ³ (1 단계)	<u>280</u>
	101 ~ 300 m ³ (2 단계)	<u>270</u>		101 ~ 300 m ³ (2 단계)	<u>350</u>
	301 ~ 1,000 m ³ (3 단계)	<u>330</u>		301 ~ 1,000 m ³ (3 단계)	<u>430</u>
	1,001 ~ 2,000 m ³ (4 단계)	<u>400</u>		1,001 ~ 2,000 m ³ (4 단계)	<u>550</u>
	2,001 m ³ 이상 (5 단계)	<u>470</u>		2,001 m ³ 이상 (5 단계)	<u>650</u>
욕탕용	0 ~ 1,000 m ³ (1 단계)	<u>570</u>	욕탕용	0 ~ 1,000 m ³ (1 단계)	<u>590</u>
	1,001 ~ 1,500 m ³ (2 단계)	<u>670</u>		1,001 ~ 1,500 m ³ (2 단계)	<u>690</u>
	1,501 ~ 2,000 m ³ (3 단계)	<u>780</u>		1,501 ~ 2,000 m ³ (3 단계)	<u>800</u>
	2,001 m ³ 이상 (4 단계)	<u>900</u>		2,001 m ³ 이상 (4 단계)	<u>920</u>
산업용	m ³ 당	<u>230</u>	산업용	m ³ 당	<u>270</u>

【별표2】

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(조례 제10조제3항 관련)

현행		개정안	
업종별	구분내역	업종별	구분내역
가정용	• 전용 또는 공용 급수전에 의한 가사용 급수 • 담배, 연탄, 양곡, 문방구, 지물포, 철물 등의 소매점 및 부동산중개업, 인장업, 행정서사업, 수예점, 만화가게, 구멍가게 등으로서 10㎡미만의 소규모 가게 • 국가·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및 국가유공자단체 • 시설소화전	가정용	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
일반용	• 타 업종에 속하지 않은 모든 급수	일반용	• -----
욕탕용	• 목욕장업(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필한 목욕장) 단, 바닥면적 100㎡이하인 목욕장은 일반용 • 「의료법」 및 「안마사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한 시설규모 연면적 830㎡, 욕실 발한실의 바닥면적 합계 90㎡)이상이 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	욕탕용	• ----- 330㎡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 • -----
산업용	•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 • 두채 재배업소	산업용	• ----- • -----
주) 1. 상기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수, 지하수 및 기타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. 2. <u>영업용중</u>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는 산업용으로 적용한다. 3.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.		주) 1. ----- ----- -----. 2. <u>일반용</u> ----- -----. 3. ----- ----- -----. -----	